

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아이수루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1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08일
발 의 자: 아이수루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 경, 김기덕,
김영철, 김원태, 남창진,
민병주, 유정희, 이원형,
이종태, 이종환, 임종국,
한 신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기존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상 불분명하던 상호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그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의회의 상호연결 등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상호결연의 원칙 및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상호결연 체결 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상호결연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함(안 제7조)
- 사. 상호결연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교류협력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다양한 국외 지방의회와 경제·사회·문화·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교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, 의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외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각종 협력활동을 말한다.
2. “상호결연”이란 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전반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.

제3조(의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상호결연 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상호결연의 원칙 등) ① 의장은 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의회와 대상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
1. 의회와 대상 국외 지방의회 간 국제적 위상의 유사성
2. 산업,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과 발전 가능성
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
4.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
5. 역사적·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
6.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

③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
2.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
3. 상호결연 체결 의회 간 초청 및 방문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현안사항 및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상호결연의 체결) ① 상호결연의 체결은 의장과 국외 지방의회의 장

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공동 관심 사항 및 교류계획 등에 관한 합의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,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그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.

③ 의장은 상호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상호결연의 취소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호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해당 국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
2. 교류 단절로 상호결연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
3. 그밖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8조(시행규칙) 그 밖에 상호결연 등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의의회가 국외 지방의회 등과 체결한 상호결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(의장의 책무) 및 제6조(상호결연의 체결)에 따라 홍보 및 상호결연식 개최·참석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관련부서(의회사무처 운영지원과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실시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 서울특별시의회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관련 예산 내역

사업명	예산액(천원)
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	433,812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이설화
☎ 02-2180-7952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